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검역대응 지침(제9판)

2020. 7. 2.

중앙방역대책본부 검역관리팀

본 대응 지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유입에 따라「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9판)」을 근거로 국립검역소 검역대응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향후 감 염병 위기경보 수준 및 발생 상황에 따라 보완·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 차

I. 대응원칙 ····································	·· 1
Ⅱ. 사례정의	·· 2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	··· 4 ··· 5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9
1. 검역조사	
V. 진단검사 및 격리조치 ····································	14
VI.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	17
Ⅷ. 접촉자 관리	19
Ⅷ. 기타 행정조치	21
*** 1. 건강상태질문서	24 26 27 28 29 32 33 34 35 36
《부록》 1.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인을 위한 실험실 검사 관리 3. 코로나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 4. 격리시설 내 임시격리 대상자 안내문 5. 검역관리대상자 검역조치 절차 안내 6. 단기체류 외국인의 격리 관련 사항	43 ··· 47 52 55

[주요 개정사항]

구분	내용
조치 사항	< 항만 검역대응 절차 신설> • 선박 검역조사 분류 방법 및 승선검역 대상 지정 명시 • 선박 내 하선자(상륙허가자 포함) 발생시 조치사항 명시 - 하선자 전수 검역소 진단검사 실시 - 선원교대 등의 목적으로 법무부 입국심사를 받는 경우 자가 또는 시설격리
부록	• 입항선박 검역조사 방법 결정을 위한 점검사항 추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확인서 추가

1. 대응 원칙

- (법적 근거) 중국 후베이성 등에서 보고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을 적용하여 대응
 - 「검역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국내유입·확산 방지를 위해 적용
- (대응 방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통보용, 제 9판)에 따라 효율적인 검역 절차 마련
 - 코로나19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 향후 발생 상황과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사례정의, 잠복기, 대응절차 등 변경 예정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공·항만 검역의 경우, 본 지침을 기본으로 따르되, 검역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세부절차 등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음

Ⅱ. 사례 정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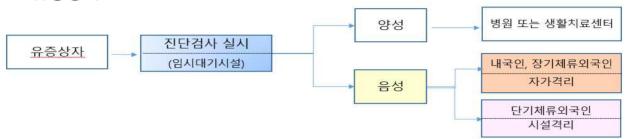
본 사례 정의는 국내 유입된 코로나19의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 상황에 적용하며,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 지침(지자체용)」 변경에 따라 사례정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 사례 정의

- 확진환자
 -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환자
 -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나타난 자
 -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 코로나19 유전자(PCR) 검출, 바이러스 분리
- 주요 임상증상: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다음에 해당하는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적극적 검사 권고(조사대상 유증상자 1로 신고)
 -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 ※ 검역단계 사례분류는 사례정의를 참고하여 중앙역학조사관이 판단할 수 있음
- 2. **감염병의심자 정의**(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5의2호, 2020.3.4. 시행)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
 -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 유증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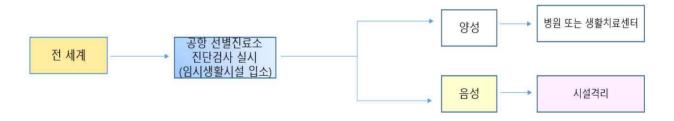


□ 무증상자

①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② 단기체류 외국인



* 입국 3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하며. 인천공항 입국자의 경우 09:00~19:00에는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19:00~09:00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체채취 하여 검사

③ 격리 면제 대상자

* A1(외교), A2(공무) 또는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격리면제서'를 사전발급 받은 경우 등



※ 외교관과 그 가족 등 A1(외교), A2(공무) 체류자격 입국자는 공항(주간)·임시생활시설(야간)에서 진단검사 후 거주지로 이동하여 대기 가능(결과 확인까지 자가격리 의무)

1. 검역조사

가. 입국검역

- 모든 입국자 대상 발열체크 건강상태질문서 확인 후 특별입국절차 수행
- 검역관은 국내 입국자 전수 대상 발열확인(발열감시카메라, 고막체온계 등), 건강상태질문서[서식 1] 확인, 격리주의 안내문 배부[부록 1]
 - * 마스크 미착용자 대상 마스크 제공하여 착용하도록 안내

나. 특별입국절차

- (절차) 입국 전용 심사대에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또는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 및 특별검역신고서[서식 2] 확인
 - ①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입국자의 인적사항, 국내 연락처, 주소, 직장명 (학교명) 등 작성 확인
 - ② (관련 앱 설치) 본인 소지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설치여부를 현장에서 확인
 - ③ (전화 수신여부 확인) 현장에서 특별검역신고서에 기재된 연락처 (휴대전화 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수신여부 확인
 - ④ (특별입국절차 완료에 따른 조치) 연락처 및 입국자별 관련 앱 설치 여부 확인 후 다음의 조치 수행
 - 연락처 및 앱 설치 확인 시 → 검역확인증 발급[서식 3]
 - 시설격리 미동의, 중국 후베이성 방문체류 외국인 → '특별입국절차 입국불허 요청서'[서식 4] 작성 후 법무부로 송부
 - * (법무부) 앱 미설치자 및 모든 입국자의 특별검역신고서 상의 연락처, 한국내 거주 주소 등에 대한 정보 입력(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 → 지방자치단체로 정보 공유
- O (일일상황 보고) 해당 검역소는 특별입국 일일상황 및 앱 미설치자 명단을 중앙방역대책본부 검역관리팀으로 보고

2. 유증상자 검역조사 · 조치

- (유중상자 검역조사)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조사 후 검역소 격리시설(실) 등에서 임시격리 및 진단검사 실시(격리 면제 대상자 모두 포함)
 - 서류 간소화(유증상자 검역조사서 생략, 필요시 역학조사서 간소화)
 - 검역관은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와 장갑 착용
- 검역대상자는 마스크 착용
 - * 발열 확인 시 추가로 고막체온 측정(해열제 복용여부 확인)
- ** 항공기(선박) 입항 전 발열 또는 호흡기질환 유증상자 발생 신고 시, 항공사(해운대 리점)와 협의하여 의심환자 선(先)하기 조치하여 검역조사 수행
- 고열(38℃초과) 지속, 호흡곤란 등 호흡기증상 등 상태가 중증이상인경우 또는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국립중앙의료원 등 의료기관 이송 조치
 - * 관할 시도 병상배정 담당자와 협의 필요

[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참고자료] (대한의사협회)

구분	분류기준
경증	의식명료하며 아래조건 하나이상 충족 ① 50세 미만 ② 기저질환 없음 ③ 해열제 복용하여 38도 이하 ④ 호흡곤란을 제외한 1개 이상 증상'⑤ 흡연자
중증	의식명료하며 아래조건 하나이상 충족 ① 해열제 복용해도 38도 초과 ② 호흡곤란 또는 영상소견상 폐렴
위중	① 의식이 떨어진 경우 ② 중증의 호흡곤란 ③ 산소포화도 90% 이하 ④ 영상소견에서 중증도의 양측성 폐렴 또는 50% 이상 폐렴

* 증상: 두통, 기침, 인후통, 가래, 피로감, 근육통, 호흡곤란

[고위험군의 기준] (코로나19 지자체 대응지침 제9판)

○ **연령**: 65세 이상

○ **만성 기저질환 :**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 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HIV 환자

○ **특수상황** : 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흡연자

○ **입원환자** : 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 O (검역관)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와 상의 후 별도의 격리공간(실)로 함께 이동
- O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 기초역학조사[서식 5] 후 진단검사 실시
 - 독립된 공간(검역조사실, 유증상자 개방형 선별진료소 등)에서 검체채취 후*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격리관찰시설(실) 등에서 임시 격리관찰 수행
 - * 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
 - **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가 없는 검역소의 경우, 검역관이 역학 조사서 작성 후 국립검역소 역학조사 인력 활용
 - ※ 역학조사 시 개인보호구(Level D) 착용
- O (검체채취자) 인천공항 입국자의 경우, 시설격리 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검체채취 완료자의 여권에 별도의 스티커*로 부착하여 구분
 - * 중수본(임시시설 검사팀)에서 제공

3. 무증상자 검역조사 · 조치

- 가. 내국인 · 장기체류 외국인
 - 입국자 전수 앱 설치 확인
 - (공통사항) 14일 동안 자가격리 대상임을 안내,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자 아저보호' 앱 설치 확인(특별입국절차) 후 입국조치*
 - * 법무부에서 질병관리본부장 명의의 격리통지서 발부[서식 6]
 - (**진단검사**) 국가 구분 없이 입국 3일 이내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에서 진단검사 수행

나. 단기체류 외국인

- 입국자 전수 앱 설치 확인
- (공통사항)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 동안 시설격리 대상임을 안내하고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 확인 후(시설 입소시 동 앱 삭제 후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 입국조치*
 - * 법무부에서 질병관리본부장 명의의 격리통지서 발부
- ※ 인천공항 외 공항으로 입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지정 시설에서 14일 동안 시설 격리 및 국가 구분 없이 입국 3일내 진단검사 실시
- (진단검사) 국가 구분 없이 3일내 진단검사 (인천공항 입국자의 경우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후 임시생활시설 입소)
 - * 09:00~19:00에는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19:00~09:00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 검사
- ※ 시설격리 시 혼동 방지를 위해 검체채취 완료자의 여권에 별도의 스티커(중수본 제공)를 부착하여 구분

다. 격리 면제 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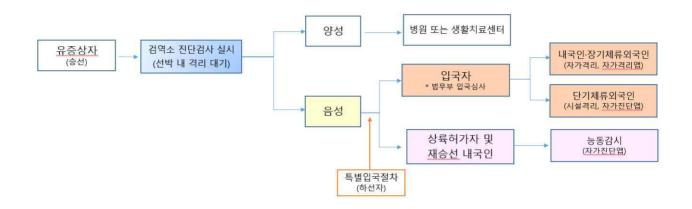
- 입국자 전수 앱 설치 확인
- (공통사항) 공항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실시(결과 나오기 전까지 임시생활 시설에서 대기)하고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필수로 설치한 후 입국 가능
 - ※ 시설격리 시 혼동 방지를 위해 검체채취 완료자의 여권에 별도의 스티커(중수본제공)를 부착하여 구분
- (승무원) 유증상일 경우에만 진단검사 실시
- (외교관과 그 가족 등) A1(외교), A2(공무) 체류자격 입국자는 공항 (주간 9시~19시)·임시생활시설*(야간 19시~9시)에서 진단검사 후 거주지로 이동하여 대기 가능(결과 확인까지 자가격리 의무)
 - * SK무의연수원(인천 중구)으로 이송하며, 진단검사 완료시 자차 또는 공관차량 등 미리 확보한 이동수단을 통해 거주지로 이동
 - ※ 다만, 신규 부임·단기출장 등 거주지가 없거나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호텔 등)를 숙소로 하는 경우는 기존과 같이 임시생활시설에서 대기(1박)

< 격리 면제 대상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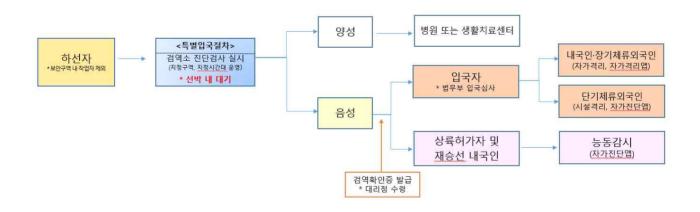
- ①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의 경우
- ②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다음의 용무로 '격리면제서' 사전 발급을 받은 경우
 - ▲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시습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
 - ▲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장례식 참여로 한정)
 - ▲ 공무국외출장 후 귀국하는 공무원 (공무출장명령서와 '격리 면제서' 소지 필수, 출장지에 대 사관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출장명령서 소지로 대체)
 - * 중요한 사업 목적으로 단기간 방문하는 장기체류비자(D8, D9) 소지 외국인 포함(자가격리면제서 소지 필수)
- ③ 항공기 승무원, 선원(선원교대 등 내·외국인 입국자는 제외)의 경우
- ④ 객실승무원 외 탑승정비사, 화물정비사(GD지참) 및 부정기편 운항에 필수적인 현지 지점 파견자 (출장품의서, 항공사 ID카드 지참)
- ※ (주한미군/A3 비자) 무증상자는 소속부대에서 인계 및 자체검사, 입국 후 14일간 자체 격리 실시(유증상자는 공·항만 검역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IV. 항만 검역대응 절차

□ 유증상자



□ 무증상자



※ 하선자 용어정의

- **입국자**: 하선자 중 선원교대 등의 시유로 법무부 입국심시를 받는 내·외국인
 - * 내국인 하선자 중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재승선 하는 사람은 입국자로 보지 않음
- **상륙허기자** : 하선자 중 상륙허기를 신청한 외국인
- **재승선 내국인:** 하선자 중 입국심시를 받지 않고 외출 했다가 선박으로 다시 돌아가는 **내국인**

1. 검역조사

가. 승선·비승선 검역

- 1) (숭선검역) 선박 입항시 검역관이 숭선하여 전 선원 발열체크 및 건강 상태질문서 확인 등의 검역조사 실시
 - * 검역관 승선시 마스크 및 장갑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철저
 - ** 마스크 미착용자 대상 마스크 제공하여 착용하도록 안내
 - **(승선검역 대상)** [서식 7]
 - ① 검역관리지역에서 입항하는 선박
 - 국가별 위험도*와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출항한 선박으로 항만 작업별, 선박 화종별 접촉강도를 고려하여 대상 선정
 - * (국가별 위험도) 국가별 인구 10만명당 신규 확진자 발생이 한국보다 높은 국가와 국내유입 확진자 발생국가(정기적으로 별도 제공 예정)

위험도 평가지표	판단 기준
출항국가의 위험도	코로나19 신규환자 발생 및 국내 유입 확진자 현황
입항 선박의 승선자 접촉 강도	대면·접촉 필요한 하역, 수리 업무 수행
국내 입국 하선자의 위험도	입항전 위험국가에서 14일 이내 선원교대 등으로 승선자가 있는 선박, 선박내 유증상자 신고 경우

- ② 검역감염병 환자등 또는 사망자 발생 신고 선박
- ③ 선박위생관리증명서(유효기간 만료 포함) 미소지 선박
- ④ 기타 검역소장이 승선검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 2) (비숭선 검역) 숭선검역을 제외한 그 외의 경우, 전자검역 또는 「검역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조사생략 선박의 경우 전산을 통한 검역조사 실시
 - O 검역관은 전자검역으로 신청한 선박 중 승선검역 대상 선박으로 판정시 '불합격' 처리 후 승선검역으로 전환하여 검역조사 실시

나. 특별입국절차

- 모든 하선자*에 대해 특별검역신고서[서식 2] **징구** 및 모바일 자가 진단 앱(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 확인 등의 특별입국절차 수행
 - * 보안구역 내 작업을 목적으로 하선하는 선원은 제외
 - ※ (자가진단앱 설치) 외국인 입국자, 상륙허가 외국인, 재승선 내국인
 (자가격리앱 설치) 하선자 중 법무부 입국심사를 받고 입국한 내국인
- (특별입국절차 수행 장소) 검역소는 각 관계기관(지방해양수산청, 출입국외국인청)과 협의하여 별도의 장소 및 시간대를 지정하여 운영
 - * 선사나 해운대리점이 선원과 항만 내 근로자와의 접촉을 최소화 하도록 해당 지정구역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안내

○ (특별입국절차 방법)

-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입국자의 인적사항, 국내 연락처, 주소, 직장명 등 작성 확인
- (관련 앱 설치) 본인 소지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설치여부를 현장에서 확인
 - * 응급환자로 긴급하게 병원으로 후송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가진단앱' 미설치 시 검역확인증 미발급 조치
- (전화 수신여부 확인) 현장에서 특별검역신고서에 기재된 연락처 (휴대전화 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수신여부 확인
 - ※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방문·체류 외국인 → '특별입국절차 입국불허 요청서' 작성 후 법무부로 송부
- O (일일상황 보고) 해당 검역소는 특별입국 일일상황 및 앱 미설치자 명단을 중앙방역대책본부 검역관리팀으로 보고

다. 진단검사

- (대상) 하선자 전원(보안구역 내 작업 선원 제외)
 - * 응급환자로 긴급하게 병원으로 후송하는 경우에 한하여 진단검사 생략 가능
- (**장소** 등) 검체채취는 검역소별 각 관계기관(지방해양수산청, 출입국 관리청)과 협의하여 별도의 **장소 및 시간대를 지정하여 운영**
 - * (유증상자) 해당 선박에 승선하여 검체채취 수행
- (대기장소) 검체채취 후 선박 내 대기
 - * (유증상자) 선박 내 개인선실에서 진단검사 결과 판정시까지 격리 대기
- (이동) 해당 선원의 선사나 해운대리점 관리자가 별도로 지정된 검체 채취 장소까지 동행하며, 진단검사 실시 후 대기 할 선박까지 이동
 - * 이동시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하며, 해당 선원과 항만 내 근로자와의 접촉을 최소화 하여 동행하도록 안내
- O (결과확인) 진단검사 결과 '음성' 확인시 검역확인증* 발급
 - * 선사나 해운대리점에서 대리 수령 가능
- 라. 격리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청)에서 질병관리본부장 명의의 격리통지서 발부
 - 입국자
 - (내국인) 14일 동안 자가격리 및 자가격리앱 설치
 - * (법무부) 앱 미설치자 및 모든 입국자의 특별검역신고서 상의 연락처, 한국내 거주 주소 등에 대한 정보 입력(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 → 지방자치단체로 정보 공유
 - (외국인) 14일 동안 시설격리 및 자가진단앱 설치
 - **격리면제자** * 14일 동안 자가진단앱 설치를 통한 능동감시
 - 하선자 중 상륙허가 외국인 및 재승선 내국인
 - 입항 전 14일 이상 ①선박에서만 체류하고 ② 승하선 및 선원교대 이력 없고 ③유증상자 및 환자 발생 등이 없는 선박 내 선원*
 - * 해수부에서 해당 정보 공유시

2. 유증상자 검역조사 · 조치

- O (유중상자 검역조사)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검역조사 후 역학조사 실시
 - * 발열 확인 시 추가로 고막체온 측정(해열제 복용여부 확인)
- 서류 간소화(유증상자 검역조사서 생략, 필요시 역학조사서 간소화)
- 검역관은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와 장갑 착용, 검역대상자는 마스크 착용
- O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 기초역학조사 후 진단검사 실시
 - 선박 내 독립된 공간에서 검체채취 후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까지 선박 내 개인 선실에서 격리 대기
 - * 타부처 파견 의사를 포함하며,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가 없는 검역소의 경우, 검역관이 역학조사서 작성 후 국립검역소 역학조사 인력 활용
 - ※ 역학조사 시 개인보호구(Level D) 착용
- 유증상자 발생 선박의 경우, 해당 선원의 검사결과 '음성' 판정시까지 하선 및 하역 등 작업 금지
 - ※ 선박 내 확진자 발생 시 전 선원 하선 금지
- 고열(38℃초과) 지속, 호흡곤란 등 호흡기증상 등 상태가 중증이상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관할 시도 병상배정 담당자와 협의 후 의료기관 이송 조치
 - ※ 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및 고위험군의 기준은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참고

∨. 진단검사 및 격리조치

- 가. 검체채취 및 진단검사 실시
 - O (검체채취 장소) 검체 채취가 가능한 독립된 공간(검역조사실, 격리시설(실) 등)
 - O (검체종류) 상기도(비인두와 구인두 도말 혼합) 검체, 기침이나 가래가 있는 경우 하기도(가래) 검체 ※경증인 경우 상기도 검체만 채취
 - * [부록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인을 위한 실험실 검사관리'참조
 - (상기도 검체) 비인두도말물과 구인두도말물을 채취
 - (하기도 검체) 객담이 있는 경우 채취(객담 유도 금지)
 - (개인보호복) 검체 채취 시 긴팔가운을 포함한 4종(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장갑,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또는 전신보호복(레벨 D) 착용[부록 3] ※ 전신보호복 위에 일회용 긴팔가운 착용 후 검체채취 마다 가운과 장갑만 교체 가능 ⇒ 착·탈 소요시간 단축하고 전신보호복 부적정 착용 사례 방지
 - (진단검사) 코로나19 진단검사가 가능한 검역소*는 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19 유전자(PCR) 자체 검사 수행(필요시 수탁기관 활용)[서식 8]
 - * 수탁기관으로 검체 의뢰시 검체의뢰 관리대장 작성하여 관리[서식 9]하고, 매달초에 검역관리팀(메모보고)으로 전원실적 송부
 - 진단검사 기관은 매일 진단검사 현황을 진단검사관리총괄팀, 검역 관리팀으로 일일보고(메모보고) 수행
 -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 긴급상황실, 검역관리팀으로 유선보고

나. 검역소 격리시설(실) 임시 격리관찰

- ※ 조사대상 유증상자 또는 의사환자 중 검역소 격리시설(실)에서 임시격리관찰시 적용하며, 격리시설 운영은 「국립검역소 격리시설(실) 관리 지침」에 따름
- O (격리 장소) 검역소 격리시설(실) 및 지정 임시격리시설
 - * 선박 하선자의 경우 진단검사 결과 판정시까지 선내에서 대기하며, 선사나 해운대리점 관리자의 인솔하에 마스크 등 착용 후 이동
 - 격리(검사)시설로 이송 시 검역관은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및 장갑을 착용하고 이송 대상자는 이송 시 마스크 착용 유지함
 - 해당 검역소에서 격리시설(실) 부족 상황 발생시에는 인근 검역소 시설을 공동 이용하도록 함 * 격리시설 운영 인력 등 검역소간 협력 운영
 - 조사대상 유증상자 다수 발생으로 자체 격리시설 수용한계를 벗어나는 경우를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
- (**검역관**) 각 검역소 격리시설(실)로 격리대상자와 함께 이동 및 검역관리팀으로 격리대상자 발생 메모보고*
 - * 다수의 격리대상자 발생 시 격리대상자 관리대장(서식 10) 또는 일일상황보고로 갈음
 - ** 기초역학조사서 파일 첨부
 - (격리관찰자) 진단검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 시설 내 임시 격리관찰
 - *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가 격리관찰 대상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격리병상(의료기관)으로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격리병상 배정요청 후 이송
 - ** 격리관찰자에게 임시격리 대상자 안내문 배뷔부록 4
- (검사결과 보고·통보) 지역거점검사센터는 의뢰한 검역소에 검사결과 통보(메모, 유선) 후 접촉자관리팀, 검역관리팀에 인적사항(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출발지 등), 검사결과(양식은 별도 송부) 보고
 - * 시스템 구축 전까지 별도 송부하는 양식으로 보고 수행

- (검사 음성) 검역관은 대상자에게 검사결과 안내[서식 11] 및 해당 안내문 배부, 14일 동안 보건교육 내용 준수 권고, 해당 앱 설치 확인 ※ 격리통지서를 발부받지 못한 입국자의 경우 퇴소 전 발부
- (검사 양성)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검역관리팀으로 유선보고 및 관할 시·도 담당자에게 중증도에 따라 병원(중증 이상) 또는 생활치료 센터(경증) 배정 요청 및 이송
 - * 검역소에서 최초 양성 판정 시 질병관리본부 검사분석팀으로 잔여검체 송부하여 재검사 후 최종 결과판정
- (검사 미결정) 1회 추가 검사 실시 → 미결정 판정 → 24시간 후 1회 추가 검사 실시 → 미결정 판정 →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능동감시시스템에 등록하여 지방자치단체로 결과 통보

VI.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1. 확진환자 신고

- 최초인지 검역소는 질병관리본부(긴급상황실)로 즉시 유선 신고 후 감염병 발생 신고서, 역학조사서 및 건강상태질문서제출(Fax 또는 e-mail)
 - 양성으로 확인된 환자는 반드시 확진 당일 신고해야 하며, 당일 보고건에 한하여 질병관리본부(긴급상황실)에서 확진환자 번호 부여
 - → **감염병 발생 신고서**[서식 12]

<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연락처 >

- 유선전화 : 043-719-7979, 7790, 7878, 7789

- E-mail: kcdceoc@korea.kr, FAX: 043-719-9459

2. 격리병상(생활치료센터) 배정 요청

- O (검역관) 진단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각 기관(시·도 연락담당관, 중수본 생활치료센터반,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격리병상 배정 요청, 이송 담당과 연락처 공유
 - * 각 기관 담당자와 유선통화 후 기초역학조사서 사진 전송
 - ※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가 격리관찰 대상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격리병상(의료기관)으로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 적용
- (**사도 연락담당관**) 지역 내 격리병상 배정여부 확인 및 해당시설에 병상(실) 가동준비 요청. 병상 배정 결과 및 담당자 번호를 검역소에 공유

< 검역단계 확진자 발생 시 치료병상 배정절차 안내 >

- O 중증·고위험군(내·외국인 포함): 국립중앙의료원에 직접 배정 요청
- 내국인 확진자(경증):
- 거주지 소재 시·도 연락 담당관이 시·도 내 생활치료센터 또는 병원에 배정
-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교민 환자의 경우, **중수본 생활치료센터반**으로 연락하여 안성 생활 치료센터 입소 요청
- **외국인 확진자(경증)** : 장기·단기체류 여부 및 거주지 위치 불문하고, 중수본 생활치료 센터반으로 연락하여 안성 등 인천 인근 생활치료센터에 배정
 - ※ 중수본 생활치료센터반 환자관리 담당자(044-202-3628, 3626)

3. 확진환자 이송 및 인계

- (확진환자 이송) 병원(생활치료센터)에 확진환자 이송 및 도착시점 유선알림
- 이송 대상자는 이송 시 수술용 마스크 착용 유지
- 이송요원은 Level D 수준의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 구급차 운전자는 개인보호구(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와 장갑) 착용
- 이송수단은 검역소 구급차 이용
 - * 사용불가 시 보건소 구급차, 119 구급차, 민간운영 구급차(보건소 또는 119에서의 협조 요청에 한함) 이용
- (확진환자 인계) 이송요원은 병원(생활치료센터) 도착 시 의료진에게 기초역학조사서 사본 및 확진환자 인계(의료진에게 환자 건강상태를 설명)

4. 확진환자 발생 보고체계

- (조치결과 보고) 긴급상황실(및 검역지원과)로 확진환자 이송 등 조치결과 메모보고(건강상태질문서, 기초역학조사서 첨부)
- (환자 발생 통보)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소재지 관할 보건소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 웹보고 및 환자관리 요청 공문 발송*
 - * (공문내용) 확진자의 건강상태질문서 및 기초역학조사서 첨부하여 환자발생 사실,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 웹보고 독려. 환자관리 요청 안내

Ⅶ. 접촉자 관리

1. 접촉자 조사

- ※ 접촉자 조사는 확진환자 판정 시에 시행하되, 역학조사관이 확진 전 사전에 접촉자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행
- 접촉자 : 확진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감염병 예방법 제2조 제15조의 2)
- O (역학조사관) 운송수단 내 접촉자 범위 설정

구 분	조사대상자	접촉자 범위
탑승객		근접좌석탑승객* 및 담당 승무원
항공기내	승무원	담당 구역 전체 탑승객과 그 외 서비스를 수행한 접촉 탑승객, 접촉한 동승 승무원
조종실 승무원 조종 (기장, 부기장 등) 따리		조종실 동석자, 접촉한 동승 승무원, 그 외 이동 동선에 따라 접촉한 탑승객
선박 내	탑승객, 승무원	역학조사관이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 * (판단할 수 없을 경우) 의심환자 이외 전원 접촉자로 간주

- * 근접좌석탑승객(총 7열)이란, 항공기 내 의사환자 좌석 해당 열(row) 전체 탑승객과 의사환자 좌석 앞·뒤 3열 전체 탑승객을 의미함
- (**검역관**) 좌석배치도, 승객·승무원 명단을 참고하여 항공기 내 근 접좌석탑승객 및 승무원 명단 작성[서식 13]
 - ※ 근접좌석탑승객 및 승무원 등 접촉자 명단은 **확진 시 통보**

2. 확진환자 접촉자 관리

- (접촉자 명단 통보) 관할 시·도에 접촉자 명단 통보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역학조사팀, 검역관리팀)에 접촉자 명단 보고
 - * 통보: 공문 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내 검역정보시스템에서 접촉자 명단 입력

3. 검역관리대상자 검역조치 [부록 5]

- ※ 검역관리대상자 : 역학조사팀에서 확진자의 접촉자 중 출입국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에 검역관리대상자로 등록된 자
- O (출국 시) 검역관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제공받은 검역관리 대상자 출국정보를 검역관리팀에 공유(메모보고 또는 업무쪽지 등)
- O (입국 시) 검역관리대상자 검역수행 후 '검역확인증' 제공, 조치사항 내용 검역관리팀에 보고(메모보고)

Ⅷ. 기타 행정사항

- O (행정조치) 해당 운송수단에 대하여 의사환자 또는 조사대상 유증 상자 발생 통보 및 소독명령, 이동금지 등 조치, 소독이행여부 확인
- (관계기관 협조요청) 항공사, 출입국관리사무소, 세관, 공·항만공사 등 관련기관에 이송환자 이송 및 입국수속 조치를 위한 협조 요청
- 격리로 인한 항공권 변경 등 요청 시 관련업무는 항공사와 협의
- (검사결과 확인) 격리병원으로 이송 시 진단검사 결과 확인 절차는 해당 병원과 사전협의
- (이송수단 등 소독) 공·항만 내 이송환자 이동 동선에 따른 검역구역 및 격리시설(실), 이송수단 등 소독조치 및 확인
 - 코로나19 관련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 및 「국립검역소 격리시설(실) 관리지침」, 「입국자 임시격리시설(실) 소독 안내」에 따라 소독 실시
- (폐기물 처리) 환자 이송 시 사용한 개인보호복은 탈의 후 정해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담아 폐기, 격리시설(실)의 경우 「국립검역소 격리시설(실) 관리 지침」, 「입국자 임시격리시설(실) 소독 안내」에 따라 폐기물 처리
- O (검역관/지원인력 감염주의) 현장검역, 검체채취 및 검사 등의 업무 수행 시 개인보호구 착용[부록4] 및 위생관리 철저 수행
 - 검역인력 : 의사환자 관리 등의 업무수행 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발현 시 검역소장 보고 후 진단검사 실시, 결과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권고
 - 검역지원인력* : 개별 건강관리 카드 작성, 전담검역관이 직접 하루 2회(출·퇴근시) 체온 측정 및 증상 확인하여 기록(보관 유지)
 - * 검역지원인력에 대한 진단검사는 유증상 발생 시 역학조사 후 수행하고, 무증상의 경우에도 지원해제시 원 소속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실시할 수 있음

- 공·항만 상주기관 직원 감염관리
 - (유증상 발생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수행
 - * 다만, 인천공항의 경우 근무지 내에서 유증상 발생 시 공항 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가능하며. 양성일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고함
 - (확진자 발생시) 상주직원 중 확진자 발생시, 접촉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수행
- (PCR 재검출자*) 해외입국자 중 국외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 후 격리해제된 경우라도, 14일 동안 자가 또는 시설격리 수행 * (정의) 코로나19 확진자 중 격리해제 후 재양성 판정 받은 경우(구. 재양성자)
-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확진자에 준하여 조치

서식 1

건강상태질문서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9. 24.>

건강상태 질문서

					(앞쪽)
성명		성별	[]]남 [](여
국적		생년월	일		
여권번호		도착 인	면월일		
선박 • 항공기 • 열차 • 자동차명		좌석번	ই		
한국 내 주소(※	세부주소까지 상세히 기	재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휴대전화(또는 현	·국 내 연락처)				
최근 21일 동안 !	방문한 국가명을 적	어 주십시오.			
1)	2)	3)	4	4)	
최근 21일 동안어	이래 증상이 있었	거나 현재 있는 경	!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	십시오.
[]발열	[]오한	[]두통	[]인후통	[]콧듈	<u> </u>
[]기침	[]호흡곤란	[]구토	[]복통 또는	설사 []발전	<u> </u>
[]황달	[]의식저하	[]점막 지속 출 * 눈, 코, 입 등	^{[혈} []그 밖의 증	상()
위의 증상 중 해 오.	당하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형	항목 중 해당란에	"√" 표시를 ā	해 주십시
[] 증상 관련 의	F 복용 []	현지 병원 방문	[] 동달	물 접촉	
해당 증상이 없는	- 경우에는 "증상 입	 넛음"란에 "√" 표	시를 해 주십시오	. [] 증	 상 없음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검역법」 제12조 및 제3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작성인은 위 건강상태 질문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년월일작성인(서명 또는 인)

국립검역소장 귀하

148mm×210mm[황색지(80g/m²)]

특별검역신고서 및 자가진단 앱 설치 안내

< 앞면>

특별검역 신고서 **Travel Record Declaration**

생년월일
Date of Birth(出生日期)
항공기 편명
· · -
Flignt No.(航空)
도착 연월일
·
Date of Arrival(到达日期)
Date of All Ival(+ 100 1 All Ival)

한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韩国联系地址) ※ 실제 거주할 주소를 세부주소까지 상세히 기재 ※ Please write current residential address(full address). (请填写在韩实际居住的详细地址。)

휴대전화

Mobile Phone No.(手机号码)

최근 14일 동안 방문한 국가명을 적어 주십시오.

Please list all countries you have visited within 14 days prior to arrival. (请填写过去十四天之内停留过的国家。)

출발 국가 및 도시명을 적어 주십시오.(Please list the country and city you departed.) 请填写出发国家和城市名称。

in 한국 내 직장명 Name of company in Korea 한국 내 학교명 Name of school Korea (在韩所属单位名称) (在韩校名)

본 신고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검역법」제12조 및 제3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Pursuant to Articles 12 and 39 of the Quarantine Act, making any false statements concerning your information or failing to fill out this Declaration Form is a criminal offense punishable by one year of imprisonment or less or a fine of up to 10,000,000 KRW.

若回避或虚假填写本调查表,依据「检疫法」第十二条及第三十九条规定,可被处以一年以下的徒刑或一千万 韩元以下的罚款。

작성일 2020 년 Date (日期) (MM/DD/YYYY)

작성인 (서명 또는 인)

Completed by (签字) (Signature) **국립검역소장** 귀하(**国立检疫所长** 敬启)

> Director of the National Quarantine St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복지부 <모바일 자기진단앤> Self Diagnosis Mobile APP



Google Play/APP Store

행 안부 <자기격리자 안전보호앱> Self-Quarantine Safety Protection APP









<안드로이드용> Google Play <아이폰용> APP Store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 안내 Self Diagnosis Mobile App Installation Instructions

< 한국어 >

체류자격이 A1(외교), A2(공무), 사전에 한국 대사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은 자는 입국 전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신 분은 특별검역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앱 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연락처 등이 바뀐 경우 수정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국 후 한국에 체류하시는 14일 간 매일 자가진단 실시 문자를 받으실 수있으며, 자가진단 정보를 매일 앱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 ENGLISH >

People with A visas (Diplomat (A-1), Government Official (A-2)) or Quarantine Exemption Certificate issued by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install the Self-Diagnosis Mobile App and record their daily health status on the app for 14 days after arrival in Korea. Personal details entered in the "Self Diagnosis App" should coincide with the information submitted in the Travel Record Special Declaration. If there is a change to your personal details, you should update the information in the App. You may receive SMS reminders to submit your daily health status on the app for 14 days after entry to Korea. Please record your health status on the App everyday.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 안내 Guide on the Installation of "Self-quarantine Safety Protection App"

< 한국어 >

입국하신 **한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반드시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14일 동안 자기진단 및 자가격리자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의 무단이탈 등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손목 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격리 조치됩니다.(*시설이용 비용을 자부담할 수 있음)

ID: CORONA

< ENGLISH >

All Koreans and long-stay Foreigners should mandatorily install the "Self-quarantine Safety Protection App"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abide by the guidelines for self-quarantined persons including submitting their health status on the "Self-Diagnosis App" for a period of 14 days.

If you leave your quarantine area without permission during your home quarantine period or otherwise fail to comply with quarantine guidelines, you will be required to wear a safety band on your wrist. If you still refuse to comply, you will be ordered to quarantine at a facility. (*You may be required to pay for the use of the facility.)

검역확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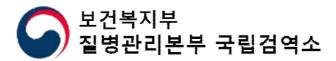
Health Screening Certificate

성명(Name):

본 검역확인증 소지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 대상자로 **검역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his certifies that the holder has completed COVID-19 screening measures including temperature check and submission of Health Declaration Form.

년 월 일 (yy) (mm) (dd)



특별입국절차 입국불허 요청서 (검역소→법무부)

특별입국절차 입국불허 요청서

	성명 (Full name)				
불허대상자					
인적사항	국적 (Nationality)	생년월일 (Date of Birth)			
코로바이라	H스감염증-19 대응과 관련하♡	녀, 위 승객은 검역법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	은 사유로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	기칠 염려가 있고,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으므로 입	국불허를 요청합니다.				
요청사유					
①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자 []					
2	② 연락처 현장수신 확인 불가 []				
3	격리거부, 격리비용 납부거부 등	등 시설격리 조치 불응 []			
(4)	기타 사유 []			
	년	월 일			
[담당자] 소	속: 직급: 성	성명: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국립____검역소장 (직인)

<u>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u>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서식 5

기초역학조사서[검역소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역학조사서

1. 조사대상자 인격	역사항					
1.1 성명		1.2 주민등록번 호		- 1.3	3 성별 🗆	남 □ 여
1.4 국적 □국내 □ :	국외 ()	1.5 거주지 주소				
1.6 연락처 (보호자)	_	1.7 직업 (직장명, 학교명)				
2. 발생지역 여행	력 (해당사항에 ☑표시	, ,				
2. 20M7 VIO		- ^ (기세) 도시명:	기간: 년	년 월 일 <i>~</i>	년 월	일 일
2.1 최근 14일간		도시명:	기간: 년			
방문 지역 및 기간		 도시명:	기간: 년			
2.2 여행 목 적	□ 관광 □ 업무(출정	낭) □ 해외근무	□기타()	
2.3 입국 시 경유	□ 예 □ 아니오					
2.3.1.입국시 경유지	입국 경로 : 항공편/선박명 :		- -	_	_	
	경유지 공항 밖 출입 여부 :	□ 출입함 (출입한 공항	:	공항 밖 체류시긴	<u>F</u> :)	□ 출입안함
2.4 입국 일시	년	월 일	시 항공	공편/선박명 ()
3. 임상증상 (해당사	항에 ☑표시 또는 기재)					
3.1 최초 증 상	□ 발열 (주관적호소, 미인지발일	g) 🗌 호흡기증상	_ ·	비호흡기 증상	□ 기타	·증상
3.1.1 발현 일시	월일 부터	월	일 부터 _	월 일부	터	일일 부터
	□ 주관적 호소 □ 미인지 발열	□폐렴		두통 근육통	□구토	
3.1.2. 증상의 종류	(체온: 1차- ℃	□기침 □기래		ㄷㅋㅎ 오한 콧물/코막힘	□ T 포 □ 복통 □ 설사	
	2차 - °C 3차 - °C	□ 인우공 □ ㅎ흐고라		후각저하(후각싱 미각저하(미각싱		()
3.2 증상 소실 여부	□증상소실 □증상지속 (증상소실일자 :	□증상소실 □경) (증상소실일자:		증상소실 □증상 상소실일자:		소실 □증상지속 :실일자:)
3.3 해열제 복용 여부	□예 (마지막 복용시간	: 월 일 시) □아니오	3.4 흡연0	4부 □예	□아니오
3.5 기저 질환(질병력)	□예 (기저질환:) □아니오	3.6	임신 여부 [□예(주)	□아니오
3.7 의료기관 진단	□ 폐렴 □ 급성호흡 □ 흉부방시선촬영 : □	휴곤란증후군 □]예 (소견 :]기타()) □아니오	
4. 역학적 연관성						
4.1 동반자	□단독(1인) □2인	이상 여행(가족, 업·	무 등) (동 행지	다: 명,	관계)
	□국내·외 확진환자 접촉					
4.2 감염위험요인	□급성호흡기증상자	(발열, 기침, 폐렴 등)요	<u> </u>	촉일: 년 :	월 일	
(발병일로부터 14일 이내)	□현지의료기관 방문		접취	접촉일: 년 월 일, 방문사유:		
	□해당 없음					
중앙역학조사반 작성란						
	□조사대상 유증상제	다 □사례 '미해당'				
시례 분류	역학적 □해외병 연관성 □확진학	방문 () 환자 접촉		임상증상	□ 발열 □ 호	열+호흡기증상 호흡기증상 ·
검역소 조치사항(중복기입) □시설격리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으로 이송	[□기타(- □보건	// 1교육
검체채취 구분	/ □국가지정 입원치 □기타(,	검역소 내 검체	-
담당 역학조사관	니기네(l례 분류 일시	년	월	일 시

서식 6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성 명		생년월일	
격리 구분	격리 기간		
□ 자가 □ 시설		격리 장소	
□ 시설 □ 병원	격리 장소	주소	

귀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제2항, 제47조제3호,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격리조치'**함을 통지합니다.

격리자는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준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격리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본 격리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의3 제3부터 제5호에 따라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민법」제750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의 무단이탈 등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과 연동되는 손목 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격리 조치될 수 있고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앱의 설치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시설격리 조치될 수 있음(*시설이용 비용을 자부담할 수 있음)
- 또한, **외국인**의 경우「출입국관리법」제11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89조 제5호에 따라 **사증 및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강제퇴거, 입국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02 년 월 일

질병관리본



소속	긴급상황센터
직위	주무관
성명	김영기·김보경
연락처	043-719-
[건탁시	9082, 9302

Notice of Isolation/Quarantine Name Date of Birth Duration Effective from to Type of Quarantine/ Name Isolation Place of Address Quarantine ☐ Home ☐ Facility Isolation ☐ Hospital

You are receiving this notice because you are ordered to quarantine as a person suspected of being infected with the pathogen of an infectious disease in accordance with Articles 42(2), 47.3, 49(1)14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During your quarantine, you may not leave your quarantine area without prior permission of the Director of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or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that issued this action. You are required to comply with the rules set by the Director of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or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If you have objections to the quarantine action, you may file for an administrative appeal or administrative suit within 90 days of receiving this notice.

- * Failure to comply with this action may result in:
- Criminal penalty of imprisonment up to 1 year or a fine up to 10 million won according to Article 79-3, subparagraphs 3 through 5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 Civil damages according to Article 750 of the Civil Act in the event that your failure to comply constitutes violation of law and causes damage to the state due to further transmission of the infectious disease and/or additional measures of disease control/prevention; and/or
- If you fail to comply with home quarantine action such as leaving your designated location without permission, you will be required to wear a safety band on your wrist which connects to the Home Quarantine App. If you refuse, you will be ordered to quarantine at a facility. You may also be ordered to facility quarantine if you refuse to install the Home Quarantine App or if you do not have a mobile phone. (*You may be required to pay for the use of the facility.)
- (For foreign nationals) Revocation of visa or residence permit, deportation, and/or prohibition of entry according to Article 11(1), 46(1), and 89.5 of the Immigration Act.

Date: 202__ / ____ / ____

Director of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ffiliation	Emergency Operation Center
Position	Assistant Director
Name	Kim Youngki Kim Bokyeong
Contact	043-719- 9082, 9302

隔离通知书					
姓名		出生日期			
隔离区分	隔离期间				
□ 居住地 □ 设施 □ 医院	隔离场所	名称			
		地址			

根据《传染病预防及管理法》第42条第2款,第47条第3号,第49条第1款第14号, 您属于传染病疑似传染者,须接受隔离。

隔离者未经疾病管理本部长或居住地地方自治团体长的许可,不得擅自离开隔离场所,不得在隔离场所内随意走动。必须遵循疾病管理本部长或居住地地方自治团体长规定的遵守事项。

如对隔离措施有异议,可在收到本通知之日起90日内提出行政审判或行政诉讼等。

※ 不遵守本隔离措施时

- 根据《传染病预防及管理法》第79条之三,第3号至第5号,将予以刑事处罚(一年以下徒刑或1000万韩元以下罚款)
- 违反隔离措施的事实属于非法行为,因追加防疫措施及感染扩散等原因导致国家损失时,根据《民法》第750条,当事人须承担民事损害赔偿责任。
- 居家隔离期間請務必遵守相關隔离措施,不得擅自脫离隔离場所,違反者將佩戴与 "自行隔离人員安全保護應用軟件"聯動的"安心電子手环",若拒絕佩戴手环將被送至 指定設施接受隔离。拒絕安裝"自行隔离人員安全保護應用軟件",或沒有手机者也將 立即被送至指定設施接受隔离。(*隔离設施使用費自負)
- 此外,根据《出入境管理法》第11条第1项,第46条第1项,第89条第5号,不遵守隔离措施的外国人,将予以取消签证或滞留许可、强制出境、入境限制等处罚。

202 年 月 日

疾病管理本語



部门	紧急事件处理中心
职位	主务官
姓名	金永基,金保京
电话	043-719- 9082, 9302

서식 7 입항선박 검역조사 방법 결정을 위한 점검사항

□ 점검 항목

순서	점검 항목	검역조사 방법 분류
1	코로나19 위험성이 높은 국가*로부터 선박이 입항한 경우 * 국내 유입 위험성이 높은 국가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별도 통보	
	1-1. 입항일 기준 14일 이내 선원교대 등으로 승선자가 있는 경우	숭선검역
	1-2. 선내 엔진실, 냉동창고 등에서 작업으로 승선작업자가 마스크 착용 및 2M 이상 거리두기를 하기 어려운 환경일 경우	숭선검역
2	선내 검역감염병 환자등 또는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승선검역
3	선박위생관리증명서(유효기간 만료 포함) 미소지 선박	숭선검역
4	기타 검역소장이 승선검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선박 * 마스크 및 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가능여부 고려 * 도선사 등 '검역 전 승선허가자'는 예외	

- 검역조사 방법

- ·(승선검역) '①' and '1-1', '①' and '1-2', ②, ③, ④
- · (전자검역) '①' ~ '④' 중 전부 "미해당" 인 경우

□ 점검 시점 : 입항 전 또는 변경 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식 8 검체 시험의뢰서 서식

※ 해당 서식은 질병관리본부로 의뢰하는 경우에 대한 서식으로, 관할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 검사 의뢰시, 해당기관의 서식에 맞추어 작성 및 의뢰 필요

■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8. 23.>

						처 리 기 간			
	()	검체 시	럼의뢰人·	I	관한 고시」				
	이르기코메			담당자 성명					
의뢰기관	의료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환자	성 명 (또는 관리번호)			생년월일		성	増		
	발병일			검체채취일					
검체	종류(수량)								
시	험항목								
	채취 구분 또는 2차)								
담당의사소견	서								
					담당의사 :		(서명 또는 인)		
「질병관리	미본부 시험의뢰규칙	」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	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로	리기관의 장	[인]			
질병관리	본부장 귀하								
※ 첨부자료1. 검사대상	Lo								
	8월 시험에 필요한 자료	i.							
			유의	いるし					
1 0121019		= 이르기코네이어야			L. I⊏I				
 의뢰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어야 하며, 의료기관장의 직인을 날인합니다. 의뢰기관의 전화번호는 결과회신이 가능한 번호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역결핍증(AIDS)의					1)]			
4. 검제 송· -	류(수량)란에는 검체!	의 종뉴와 종뉴멀 =	수당을 함께 기계	배하여 수시기 바랍니	·])]			
			처리	절차					
의뢰서 직	∤성 →	접수 →	시험・김	실사 →	결재	→ 성	적서 발급		
의뢰인				 질병관리본부(담당부	-서)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서식 9

검사의뢰 관리대장 양식(엑셀작성)

* 향후 비용지급의 근거로 활용되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확히 기재 필요 **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작성(비고에 여권번호 기재)

									EE 10		166		-
연 번	의뢰 일	성 (Surna me)	이름 (Givenna me)	국적 (Nationality)	생년월일	운송 수단명	검체 종류	수탁검사 기관명	판정결 과	판정결 과 통보일	인 수 자	인 계 자	비고
(예	20 20-	송	길동	REPUBLI C OF	yymm		상기도 또		<i>양성</i> 또는 음성	2020 -03-0			
)	03- 01	0	20	KOREA	yymm dd		는 하기도		음성	2			
							하나의 셀에 는						
				여권에 명			하나의데이						
				시된 공식 시된 공식			이 시작되어 <i>터만기재</i>						
				적인 국적			(★ 검체 1						
				<i>(영문)으</i>			<u>건을 기준으</u>						
				로 기재			<u>로 작성!!)</u>						
		성명	<i>로 작성</i>	<i>−0‡</i> //	주민번								
				٨/	호 앞자		1명이상·하		<i>미결정(</i>				
	<i>yyyy</i> - m	- 데 "한글	국인은 명"으로)REPUBLI	리 형식		기도2건검사		indatar	<i>уууу-</i>			
(설명)	m-d	 -외국인	작성 I은여권에	COFKOR	(yymmd		했을경우, 살		minate) 은	mm-d d			
3)	d 형식 유지	 	시된 계:0 근데	EA(o)	d)으로		<u>하기도 각각</u>		minate) 은 데이터 에서 삭 제	d 형식유 지			
	유지	947	중 프로 당성 은여권에 시된 명"으로띄 일치하게 당성	-u-1-1-1-7	<i>6자리</i>		<i>분리하여 작</i>		M 7	79			
		_	48	대한민국	기재		<u>성</u>						
				(x)			<i>(셀추가하여</i> 2줄로작성)						
				한국(x)			2팔도약성)						
							- <i>구인두,</i>						
				South			기년기, 객담, 구,						
				Korea(X)			ㅋᆸ, ㅜ, 비, 객 등으						
							,, , , , , 로 나열 표						
							기 금지						

서식 10 격리대상자 관리대장

격리대상자 관리 대장

NO	성 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선(기) 명	체류지역 (기간)	주소	입실시 증상 (시작일)	입실일	퇴실일	격리실 NO.	이송현황
	홍길동(남) (1980.1.1)	KOREA	DONG-A (CHINA)	중국(7일)		발열, 인후통 (2018.1.1)	1.10	1.20	1	보건교육후 귀가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확인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확인서									
	성 명				국적					
신청인	생년월일			운	송수단 명					
	주 소									
■ 검체 채취										
검체번호	검체 채취일	검체 채취자	검체 -	종류	채취 목	적	비고			
위 사람의 (검쳐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결과	(검체) (병명)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항	목	CT값		최종주	결과		결과 판정일			
* 0	* 이 확인서는 본인 검사결과 확인 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녀 월	잌							

국립○○검역소장 직인

서식 12

감염병 발생 신고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9. 11. 22.>

감염병 발생 신고서

※ 뒤쪽의 선	· 신고방법 및 작성방법에 관한 안내를 읽	고 작성하여 주시	시기 바라며,[[]에는 해딩	되는 곳에 √표를	합니	다.	(앞쪽)
수신자:	[]질병관리본부장 []		검역	<u>소</u> 장			
 [환자의 연	인적사항]							
성명		-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만 19세 0	기하인 경우 보호자 성명)		성별 []남	[]여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주소								
[]거주지	불명 []신원 미상	=	직업					
[감염병명]								
	[]에볼라바이러스병 []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인	난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i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II.4 ¬	[]탄저 []년	보툴리눔독소증]야토병				
제1급	[]신종감염병증후군(증상 및 징호	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	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	루엔자	[]디프테리	.lo}
	[] 수두(水痘) []	홍역(紅疫)	[]콜레라		[]장티푸스	<u>`</u>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백일해(百日咳)) []유행성이	하선염(流行性]	耳下腹	良炎)	
제2급	[]풍진(風疹, []선천성 풍진 []후천성 풍전	[[]폴리오		[]수막구균	간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알	균(VRSA) 감염	격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0	RE) 감염증						
	[]파상풍(破傷風) []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	레지오넬라증]]비브리오:	패혈증	[]발진티푸	<u> </u>
	[]발진열(發疹熱) []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	라증	[]브루셀리	ŀ증
TII.O. 🗆	[]공수병(恐水病) []	신증후군출혈열	!(腎症侯群出	血熱)				
제3급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필	텔트-야콥병(vCJD)				
	[]황열 []박	뎅기열]]큐열(Q熱)	[]웨스트니	·일열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類	[鼻疽)	[]치쿤구니	나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	S)	[]지카바이	러스 감염증			
[감염병 발	생정보]							
발병일	년 월 일 전	민단일	년 월	일 일	신고일		년	월 일
확진검사결	과 []양성 []음성 []검사 진	행중 []검사	미실시	입원(녀부 []외i	왜 []입원 []그 밖의 경우
환자 등 분	류 []환자[]의사환자[]병원	원체보유자 []그 밖의 경	우				
비고(특이/	나항)							
사망여부	[]생존 []사망							
[신고의료기	기관 등]							
요양기관번	호			요양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진단 의사	•	또는 날인)		신고기관장	성명			
[보건소 보								
국적(외국인	인만 해당합니다)							
환자의 소속		환자9	의 소속기관	주소				
추정 감염계								
	[]국외(국가명:	/ 체류기간:	~	/ 일	입국일: 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접촉자 조사 양식

쇈	접촉자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상세주소	접촉가뿐	격라구분	내국인	국적	핸드폰	연락처	작업 작정명 (학교명)	<i>ক</i> ৰবৰ্	와 환 부
	띄어쓰 기 금지	생년월일 년도(4자리) 월(2자리) 일(2자리) 등록 숫자만 입력 (예시: 20160905)	1:남 2:여	주소를 기준으로 시도, 시군구 코드를 수기로 선택 매칭		01[의료진] 02[의료진 기타] 03[환자] 04[가족] 05[동료] 06[기타]	1[격리안함] 2[격리해제] 3[자가격리] 4[병원격리] 5[코호트 격리]	Y : 내국인 N : 외국인 반드시 국적입 력	내국인 항목 'N' 선택 시 텍스트 입력	숫자만 입력	숫자만 입력	텍스트 입력	숫자만 입력	Y : 예 N : 아니오
1	\$00	1971010 1	1[남자	서울 마포 상수동	111-11	1[의료진]	3[자가격리]	Y		010123 41234	021234 1234	OO병원	2015063	Y
2	홍00	1971010 2	1[남자]	서울 마포 상수동	111-11	4[가족]	3[자가격리]	Y		010123 41234	021234 1234	00학교	2015063	N
3	MOO	2001010	1[남자]	서울 마포 상수동	111-11	2[의료진 기타]	3[자가격리]	N	줅	010123 41234	021234 1234	00기업	2015063	N
4	\$00	2001010	1[남자	서울 마포 상수동	111-11	4[가족]	3[자가격리]	Y		010123 41234	021234 1234	무직	2015063	N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국문〉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귀하는 「검역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감염 예방을 위해 **입국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12:00까지 격리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ex:6월 1일 입국하신 분은6월 15일12:00까지 자가격리 기간입니다.)

공항 도착 후 주의사항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 및 대화 최소화하기
- 검역 단계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될 경우 유증상자용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 실시 *검사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뤄집니다.
- 무증상자의 경우 자택으로 이동하며, 입국 후 3일 이내(유럽발, 미국발 입국자) 또는 입국 후 14일 이내(기타 국가발 입국자) 진단검사 실시
- ⊘ 공항에서 자택 이동 시, 자차 또는 별도 지정된 공항버스, KTX(전용칸) 이용하기 이동 중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자택으로 바로 귀가하기
- 자택 도착 즉시 관할 보건소에 유선으로 본인이 격리 대상자임을 알리기
-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14일 동안 자가진단 및 자가격리자 생활수칙을 준수하기

격리자 생활수칙

결리대상자

-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바깥으로 외출 금지
-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 자주 환기하기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이 곤란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도움 요청하기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 개인용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은 가족 또는 동거인과 구분하여 사용하기
- 발열,기침,호흡곤란 등 증상 발생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기

격리대상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자가격리대상자와 불가피하게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2미터 이상 거리두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
- 테이블 위, 문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등손길이 많이 닿는 곳은 표면을 자주 닦기
- 다수와 접촉하거나 집단시설(학교,학원,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시설,산후조리원,의료기관 등)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의 격리해제일까지 업무제한하기

발행밀 2020,06.10.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개인 위생수칙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이상 임임하게 손씻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기
- 실내 환기 주기적으로 하기
- 발열, 호흡기 등 유증상 시 또는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확용 안내

*입국하신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반드시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14일 동안 자가진단 및 자가격리자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실거주지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드로이드



http://url.kr/9dqRor

구글 플레이



http://url.kr/5rntzH

맵 스토어



http://url.kr/f7dmWs

ID: CORONA

다운로드: 스토어*에서 '자가격리자' 검색 * 만드로이드(Play 스토어), 아이폰(앱 스토어)

※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의 무단이탈 등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손목 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격리 조치됩니다. (시설이용 비용을 자부담할 수 있음)

> 위의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되며, 준수사항 위반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발행일 2020.06.10,







Coronavirus Disease-19 (COVID-19)

MANDATORY QUARANTINE INSTRUCTIONS

FOR ALL INCOMING TRAVELERS TO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Quarantine Act and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ll incoming travelers, regardless of nationality, shall be subject to mandatory 14-day quarantine beginning on the date of entry and ending at 12:00 of the 15th day. (For example, if you arrived on 1 June, you are required to stay under mandatory quarantine until 12:00 of 15 June.)

ONCE YOU ARRIVE AT AIRPORT

- Wear a facemask at all times and avoid contact or talking with other people.
- You are required to be tested if you have suspected symptoms.
- FOREIGNERS ON SHORT-TERM VISIT are required to enter mandatory quarantine (at their own expense) at a facility designated by the Korean government.
 - IF YOU BOARDED FROM EUROPE OR THE UNITED STATES:

You will be tested at an open walk-through screening station at airport and enter quarantine/isolation at a temporary living facility.

- IF YOU BOARDED FROM COUNTRY/REGION OTHER THAN ABOVE:
- You will enter mandatory quarantine at a temporary living facility and will be tested within 14 days.
- Note) Those who have valid quarantine exemption are required to be tested and will be subject to active monitoring for 14 days by designated public health officials. The designated official will check and monitor their health conditions for 14 days.
 - *Valid quarantine exemptions are:
 - -Pre-approved waiver from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r
 - -A1 (diplomat on duty) or A2 (government official on duty) visa or a
 - "quarantine exemption document" issued in advance by a Korean Embassy.

FOREIGNERS ON LONG-TERM VISIT

(i.e. living in Korea) are required to entermandatory quarantine in their homes.

- IF YOU BOARDED FROM EUROPE OR THE UNITED STATES:
- If you do not have symptoms at the time of entry, you may leave the airport and enter your mandatory home quarantine.

However, you are required to visit a screening center and get tested within the next 3 days, regardless of symptoms.

- IF YOU BOARDED FROM ALL OTHER COUNTRIES:
- If you do not have symptoms at the time of entry,

you may leave the airport and enter your mandatory home quarantine.

However, you are required to visit a screening center and get tested within the next 14 days (i.e. during your home quarantine period), regardless of symptoms.

* Further actions may follow contingent on test result.

FOR ALL PERSONS SUBJECT TO MANDATORY FACILITY OUARANTINE:

Use the designated transit vehicle to move to your designated quarantine facility.

JUNE 10, 2020







FOR ALL PERSONS SUBJECT TO MANDATORY HOME QUARANTINE:

When you leave the airport, do not take public transportation.

Use a personal car or designated mode of transit (designated airport limousine bus or KTX train).

- -As soon as you arrive home, call your local public health center to inform them that you are under quarantine.
- Install the "HOME QUARANTINE SAFETY PROTECTION" app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on your phone. (This is mandatory.)



http://url.kr/9dqRor



App Store

ABOUT THE HOME QUARANTINE SAFETY PROTECTION APP:

*All persons subject to mandatory home quarantine (all Korean nationals and all foreign nationals on long-term visit) are required to install the "HOME QUARANTINE SAFETY PROTECTION" app on their mobile phone and comply with the guarantine rules for 14 days of guarantine. (ID: CORONA)

(If there is any change to your phone number or where you live, http://url.kr./5rntzH http://url.kr/f7dmWs you must notifyyour local public health center as soon as possible.)

HOME OUARANTINE GUIDELINES

INSTRUCTIONS FOR PERSON UNDER MANDATORY HOME QUARANTINE:

- To protect other people in your community from possible infection, do not leave your quarantine location (i.e. your home) as much as possible.
- -If you need to leave home for an essential need (such as getting medical care), contact your local public health center first.
- Make sure to secure an independent living space.
- If there is any space in your home that is shared with other household members (such as family members, roommates, and cohabitants). make sure that the common space is frequently ventilated.
- -If you are unable to secure an independent living space, ask your local public health center for help.
- Keep your personal items (such as towels, eating utensils, and mobile phones) separate from other household members.
- -Immediately report to your local public health center if you begin to show fever, cough, shortness of breath, or other respiratory symptoms.

INSTRUCTIONS FOR HOUSEHOLD MEMBERS LIVING WITH PERSON UNDER MANDATORY HOME QUARANTINE:

- To your best ability, avoid any physical contact with the quarantined household member.
- In situations where you have to come in contact with the quarantined household member, make sure to wear a facemask and keep a distance of at least 2 meters between you and the person.
- Closely monitor the health condition of the guarantined household member.
- -Keep clean all frequently touched surfaces and objects including tabletops, door knobs, bathroom fixtures, bedside tables, and keyboards.
- -If your work setting involves frequent contact with many peopl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chool, private classes, preschool, kindergarten, social welfare facility, postpartum care center, and healthcare institution), limit or reduce your work capacity as best as possible to minimize contact with others until your household member is released from mandatory home guarantine.

GENERAL INFECTION PREVENTION TIPS

- Wash your hands thoroughly with soap and running water for over 30 seconds.
- Cover your nose and mouth using your upper sleeve when coughing.
- Do not touch your eyes, nose, or mouth with unwashed hands.
- Frequently ventilate your rooms.
- Wear a facemask if you have fever or respiratory or respiratory symptoms, or when you visit hospitals, clinics, or pharmacies.

※ Failure to comply with this action may result in:

- -Criminal penalty of imprisonment up to 1 year or a fine up to 10 million won according to Article 79-3, subparagraphs 3 through 5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 Civil damages in the event that your failure to comply constitutes violation of law and causes damage to the state due to further transmission of the infectious disease and/or additional measures of disease control/prevention; and/or
- (For foreign nationals) Revocation of visa or residence permit, deportation, and/or prohibition of entry according to the Immigration Act.

JUNE 10,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인을 위한 실험실 검사 관리

1. 검체 채취

가. 채취장소

- (채취 장소) 선별진료소 또는 의료기관 내 다른 공간과 격리된 검체 채취 공간
 - * 단, 자가격리일 경우 격리장소에 따라 채취장소 변동 가능성 있음

나. 검체종류 및 포장

- (검체종류) 상기도(구·비인두 도말 혼합) 검체, 기침이나 가래가 있는 경우 하기도 검체
 - 경증인 자 : 상기도 검체만 채취하여 검사 의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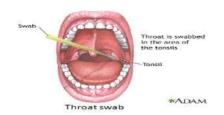
번호	검	체 종류 용기 및 용량		비고				
1	상기도	·구인두도말물 ·비인두도말물	·(용기) 하나의 VTM 배지에 비인두와 구인두도말물 동시 채취	· 분리된 독립공간에서 채취				
2	하기도	l·가래	·(용기) 멸균 50ml 튜브 ·(검체량) 3ml 이상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 채취 가래 유도 금지(에어로졸 발생 가능성 있음) 정확한 진단을 위해 가래 채취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음압실에서 채취 (음압 시설이 없는 경우, 에어로졸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부 환기가 잘 되는 독립된 공간에서 채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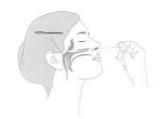
(필수 검체) 상기도, (선택 검체) 하기도 검체

- (상기도 검체) 상기도 검체는 비인두도말물과 구인두도말물을 각각 채취하여 하나의 바이러스용 수송배지에 담아 검체시험의뢰서[서식 8]와 함께 수송
 - · 비인두도말물(Nasopharyngeal swab) : 콧구멍을 지나 입천장과 평행한 각도로 면봉을 밀어넣고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몇 초간 분비물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두도록 하여 채취
 - · 구인두도말물(Oropharyngeal swab) : 혀를 누르고 인두후벽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구인두도말물 채취 방법〉

〈비인두도말물 채취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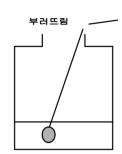


출처: ADAM, 인플루엔자, 신종인플루엔자 범 부처 사업단(TEPIK)

<상기도 채취 방법>

● 검체 용기 보관 방법

- 수송배지가 담긴 병에 도말한 면봉을 담그고 병마개 부위에서 면봉을 부러뜨린 후 뚜껑을 단단히 잠그도록 함
- 부러뜨릴 때 안쪽에 손이 닿아 오염되지 않게 주의
- 검체가 담긴 병은 즉시 냉장고(4℃)에 보관
- 검체채취 후 반드시 채취용기에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연령) 및 채취일을 기입
- ●검사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체와 함께 의뢰(4°C 유지)



- (하기도 검체) 환자 스스로 구강 내를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멸균용기(가래통 등)에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깊이 기침하여 채취
 - * 검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송 시 누출되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3중 포장)



1. 구강 세척



2. 무균용기 사용



3. 기침하여 가래 채취



4. 완전 밀봉 (4℃ 유지)

<가래 채취 방법>

○ 검체포장

- 채취된 검체가 포함된 1차 용기를 소독처리(70% ethanol)한 후 라벨 작성
- * 병원명, 검체종류, 채취일, 환자명, 성별, 나이 등의 정보 표시
- 소독 처리된 1차 용기를 흡수제(종이타올 등)로 감싼 후 2차 용기에 넣음
- 2차 용기의 뚜껑을 단단히 잠근 후 3차 용기에 넣음
- 검체 시험의뢰서를 3차 용기 뚜껑 사이에 넣은 후 포장
- 3차 수송용기 겉면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응급상황 시 연락처를 기재
- 3차 수송용기를 아이스박스에 넣은 후 냉매제(아이스팩)를 용기 주변 4면에 삽입

- 포장된 아이스박스의 겉면에 감염성 물질 표식, UN 3373 표식, 방향 표식,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응급상황 시 연락처 등을 기재

< 3중 포장용기 예시 >

구 분	1차 용기	1차 용기 2차 용기			
포장용기			Street and of the street of th		

다. 주의 사항

○ (주의 사항) 검체 채취 시, KF94 또는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일회용 장갑, 일회용 긴팔 가운 또는 전신보호복,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필요시 불투과성 일회용 앞치마 추가 착용) 등의 개인보호구를 필수적으로 착용 및 검체 채취 후 소독 필수

2. 검사 의뢰

- 지역거점검사센터(인천공항, 부산, 여수) 및 제주검역소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19 유전자(PCR) 자체 검사 수행, 그 외 검역소는 가까운 지역거점검사센터에 검사 의뢰 [서식 8] 검체시험의뢰서 서식
- 3. 검체 운송
 - 가. 검체운송 담당
 - (민간 의료기관 검사할 경우) 자체 검사 가능한 경우 운송 불필요, 수탁검사기관으로 운송은 해당 검사기관 운송체계에 따라 운송
 - (보건환경연구원 검사할 경우) 환자 최초인지 검역소 담당자가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송
 - * 검체 운송 담당자는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장갑 착용하고, 검체의 종류, 채취시간, 이송시간 정보를 확인하여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상황보고

나. 검체 운송 중 보관 조건

- 바이러스 분리 및 유전자 검사용 검체 : 4℃를 유지하여 즉시 수송
 - * 72시간 내 운송 불가능한 경우 -80℃에 보관 후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해 수송
- 다. 검체 운송 시 유의사항
 - 검체 수송 담당 지정
 - 감염성물질안전수송지침(질병관리본부) 준수
 - (수송 차량 선정 및 비치) 포장된 검체를 자가운전 차량(또는 지정차량) 트렁크에 비

치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수송차량 내부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적절한 개인보호구와 오염처리 장비(스필 키트), 소독제, 삼각대 등을 준비

○ (이동 경로 선정 및 주의사항) 최단거리 및 안전한 경로를 지정하여 기관 책임자에게 보고 후 출발하고, 미리 정해진 이동 경로로만 이동(휴게소 이용 시 정지된 차량에 필수 인원 잔류)하고 이동 중 방어 운전과 도로교통 신호 및 규칙 준수

4. 검사 시행

○ (검사기관) 유전자 검사 시행

※ 검사결과, 미결정의 경우 중앙방역대책본부(검사분석팀)에서 잔여 검체 재검사 후 최종 결과 판정(필요시 검체 재채취)

5. 검사 결과 보고

- **(검사기관)** 검사기관에서는 검사의뢰 해당 검역소 및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검사관리 총괄팀, 검역관리팀으로 검사결과 통보(메모, 유선)
 - 검사결과는 검역관을 통해 대상자(조사대상 유증상자)에게 통보 및 설명

코로나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

□ 적용범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사환자, 확진환자 및 접촉자에 대한 대응 과정 전반
- 검역, 이송, 역학조사, 선별진료, 진료, 처치, 검체채취 및 검체이송, 검사, 수술, 기구관리, 환경관리, 사체관리 등

□ 주요내용

○ 개인보호구의 종류, 선택, 착·탈의 및 주의사항, 의료폐기물로 배출



□ 사용 워칙

- 재사용이 불가피한 장비・제품을 제외하고 일회용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재사용이 불가피한 장비는 반드시 제조사 권고에 따라 소독 또는 멸균 처리
- 표준주의, 접촉주의, 비말주의(또는 공기매개주의)를 포함한 감염관리 방법 준수
-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려면 개인보호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이 중요함
 - 감염원과 접촉 전에 착용(예: 환자 접촉 전, 격리병실 밖)
 - 착용 할 때 보호구별 착용 방법 준수(특히, 호흡기보호구의 밀착 상태)
 - 사용한 개인보호구에 오염된 병원체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 착용 상태에서 환자 이외의 주변을 접촉하여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 벗을 때 본인의 신체 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 사용한 개인보호구는 감염원으로부터 안전한 곳에서 제거(예: 격리병실 밖의 갱의실 등)
- 사용한 개인보호구는 무조건 오염으로 간주하여 벗자마자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 의하여 의료폐기물상자에 버려 폐기되도록 함

- 모든 개인보호구는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파손되거나 오염된 개인보호구는 사용·보관하지 말고 폐기
- 사용한 개인보호구 중 재사용이 불가피하고 소독 처리가 가능한 장비에 한하여 적절 한 소독 처리 후 사용
- 눈에 보이지 않게 손과 신체 일부, 의복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개인보호구를 벗은 후 에 항상 손위생(손씻기 또는 손소독)과 개인위생 철저
- 개인보호구 충족 요건

보호대상	개인보호구*	필수여부	개인보호구 충족요건 또는 적용상황
ᆕᇹᅱ	일회용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0	_
오읍기	흥기 PAPR(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대체)		에어로졸 발생되는 처치 시(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대체)
눈	고글(또는 안면보호구)	0	김서림방지 및 긁힘 방지 코팅 처리
	일회용 전신보호복	0	방수성 또는 2-3시간 이상 방수 유지 혈액 및 바이러스 불침투 되는 제품
전신	일회용 장갑	0	손목까지 덮을 수 있는 장갑, 두 겹 착용
• 의 복	일회용 덧신(신발덮개)	0	발목 높이의 미끄럽지 않은 재질
	일회용 덧가운/앞치마	필요 시	몸통에서 종아리까지 덮을 수 있는 보호구 예) 투석이나 지속적 신대체요법 시 착용

□ 개인보호구의 종류와 용도, 상황별 권장범위

- 개인보호구는 호흡기, 눈, 손, 발을 포함한 전신과 의복을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고려하여 선택
 -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마스크(N95 또는 KF94 이상),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 장화 또는 신발커버 등
- 개인보호구는 질환별 또는 **감염경로, 감염 노출 상황·행위, 용도**에 맞게 보호구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
- 개인보호구별 특성과 용도

보호구	위해요소	특성 및 용도(indications for use)	참고사진
일회용 장갑(Glove)	접촉	• 손 오염 방지 • 노출정도를 고려하여 재질 선택 • 파우더 알러지 있을 경우 파우더 없는 제품 또는 나이트릴 제품 사용	200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Gown)	비말 혈액 체액이 전신이나 의복에 튐	바이러스 비말이 전신과 의복에 오염되어 간접 전파 되는 것을 방지	
전신보호복 (Coveralls) 덧신 (Shoe covers)	비말, 혈액, 체액이 전신이나 의복에 튐	바이러스 비말이 전신과 의복에 오염되어 간접 전파 되는 것을 방지	
장화 (Boots)	혈액, 체액이 신발에 튐	신발덮개 대신 착용 ・바닥이 젖거나 오염이 심할 경우 ・노출위험에 따라 선택	3
헤어캡 (Hair cap)	머리의 오염	비말이 머리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	
고글 (Goggle)	혈액, 체액이 눈의 점막에 튐	눈의 점막 오염 방지 고글 재용 시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소독제로 소독 후 사용, 보관	000
안면보호구 (Face shield)	혈액, 체액이 눈의 점막에 튐	 눈의 점막과 안면부 오염 방지 노출 위험 정도에 따라 고글 대신 착용 안면보호구 재사용 시 바이러스에 효과적 인 소독제로 소독 처리 후 사용, 보관 	8
호흡기보호구 : 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	비말 또는 에어로졸 흡입	- 코, 입 점막을 통해 호흡 시 병원체 입자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 적용상황 예 : • 의심/확진 환자 격리병실 입실 시(의료 종사자, 방문객 포함한 모든 출입자) • 기침유도 시술 시 • 에어로졸 생성 처치 시 • 의심/확진환자 이송 시 등	
호흡기보호구 : PAPR	비말 또는 에어로졸 흡입	 코와 입의 점막을 통한 감염원 흡입 방지 전지충전, 필터교환, 장비 소독 등 철저한 점검, 관리가 필요함 파손, 오작동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 사전 수리, 교체 또는 폐기하여야 함 재사용이 불가피하면 소독 처리 후 사용, 보관 	de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

				가	l인보호구		
상황, 행위	호흡기 보호				전신 보호		눈 보호
	수술용 마스크	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전동식 호흡기 보호구	일회용 장갑 ¹⁾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전신보호복 (덧신포함)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검역(검역조사)		•		•			
검역(역학조사)		•		•		•	•
선별진료소 접수, 안내		•		•	•		
선별진료소 진료, 간호		•		•	•		•
이송(구급차 운전자) ²⁾		•		•			
이송(검역관, 보건소지원, 응급구조사 등)		•		•		•	•
구급차 소독		•		•		•	•
의심환자 병실출입, 진료, 간호 등		•		•	•		•
에어로졸 생성 처치		•		•	•		•
검사(X-ray 등 영상의학검사)		•		•	•		•
호흡기 검체 채취		•		•	•		•
검체 취급(실험실, 검사실 등) ³⁾		•	•	•	•		•
검체 이송(파손없이 포장된 검체)				•			
사체 이송, 안치		•		•		•	
병실 청소·소독		•		•	•	•	•
의료폐기물 포장, 취급		•		•	•		•
의료폐기물 운반	•			•	•		

¹⁾ 의심·확진 환자 구역의 진료, 처치, 간호, 검사, 청소 등을 시행할 경우 장갑 파손 위험, 감염 노출 위험을 고려하여 이중장 갑 착용

²⁾ 구급차 운전석이 차폐되어 있지 않거나 의심환자 또는 확진환자 접촉의 기회가 있을 경우 전신보호복(덧신포함),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장갑(필요 시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추가) 착용

³⁾ 검체 취급 실험실·검사실에서 개인보호구 선택, 사용,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실험실 생물안전지침(질병관리본부 국립 보건연구원 생물안전평가과)에 따름

□ 개인보호구 착의(착용) 및 제거

○ 착의(착용)

- 상황에 따른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에 따라 미리 물품을 준비하여 올바른 착용* 순서와 방법으로 착용
- * 머리는 단정히 묶거나 고정하고 시계, 장신구 등을 제거하여 오염 방지
- * 탈수 예방을 위해 보호구 착용 전 수분을 보충하고 미리 화장실에 다녀옴
- * 착용 후 오염, 파손이 있을 경우 처치, 행위 사이에 개인보호구 교체
- * 속장갑이 젖을 정도라면 근무자 교대

○ 탈의(제거)

- 감염원으로부터 안전한 곳(예: 격리병실 밖의 갱의실 등)에서 개인보호구에 오염된 감염원이 신체 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탈의
- 각 보호구는 벗자마자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올바른 순서와 방법 으로 탈의하여 의료페기물상자에 바로 버림

구분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와 전신보호복 사용 시 순서	PAPR과 전신보호복 사용 시 순서
	1	손위생	손위생
	2	(속)장갑	(속)장갑
	3	전신보호복 하부	전신 <u>보호</u> 복
착의 (착용) 순서	4	신발커버(또는 장화)	신발커버(또는 장화)
(작용) 순서	5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전동식호흡기보호구(PAPR)4)
	6	고글(또는 안면보호구)	후두
	7	전신보호복 상체후드 착용 및 여밈	전동식호흡기보호구와 후두 연결
	8	(겉)장갑	(겉)장갑
		(격리실 등 전염력이 있는 구역 밖에서	탈의)
	1	(겉)장갑	(겉)장갑
	2	장갑 소독	장갑 소독
	3	전신보호복	전동식호흡기보호구(PAPR)
탄이 5)	4	신발커버(또는 장화)	후드
탈의 ⁵⁾ (제거) 순서	5	장갑소독	전신보호복
_ 서	6	고글(또는 안면보호구)	신발커버(또는 장화)
	7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속)장갑
	8	(속)장갑	손위생
	9	손위생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ightarrow 알림·자료ightarrow 홍보자료ightarrow 영상자료ightarrow Level D 개인보호복 착탈의법 영상 참조

⁴⁾ PAPR과 후두 착·탈의 순서는 제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제조사 권고에 따름

⁵⁾ 보호구 벗는 과정에서 속장갑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하나씩 제거할 때마다 손소독 후 다음 보호구를 탈의(제거)하는 것이 유용함

안 내 문

- 1. 이곳은 국립검역소 격리시설입니다.
- 2. 감염병 검사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이곳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 감염병으로 확인되면 지정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되며, 감염병이 아니라면 보건교육 후 귀가하게 됩니다.
- 3. 검역관이 검사결과를 통보할 때까지 외부 출입을 금합니다.
- 4. 식사는 퇴실 전까지 무료로 제공됩니다.
- 5. 검역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비치된 **전화기를 이용하여 호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6.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7. 이 격리시설은 금연구역이므로 건물 내 금연하시기 바랍니다.
- 8. 다른 입실자를 위하여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9.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악화될 경우 검역관에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안전 수칙

- 1.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 등)이 있는 경우 관찰실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시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uidelines for Quarantine Subjects

- 1. This is a quarantine facility of the National Quarantine Station.
- 2. Wait here until your infectious disease test results have been verified.
 - Patients testing positive for infectious disease will be transferred to a designated hospital for treatment, while patients testing negative will be able to go home following a class on public health education.
- 3. Patients are prohibited from going outside until a quarantine officer provides notification of test results.
- 4. Free meals are provided until leaving this facility.
- For required assistance from a quarantine officer, please call an officer
 by using one of the facility phones.
- 6. Please be careful not to fall from the bed.
- 7. This facility is a **non-smoking area**. Please do not smoke inside the building.
- 8. Please keep the noise level down out of respect for other patients in the facility.
- 9. Please notify a quarantine officer upon the worsening of fevers, coughing, breathing difficulties, and other symptoms.

Health & Safety Rules

- 1. Please pay particular attention to **personal hygiene** by thoroughly washing and disinfecting hands.
- 2. If experiencing a fever and respiratory symptoms, e.g. coughing, sore throat, and runny nose, please **wear a mask at all times** while inside the monitoring room.

隔离者须知

- 1. 这里是韩国国立检疫所隔离室。
- 2. 在传染病检查结果出来前,需在此等待。
 - ※ 若确诊为传染病则移送至指定医院接受治疗,若未感染传染病则接受保健教育后即可回家。
- 3. 在检疫官通知检查结果之前,禁止外出。
- 4. 在隔离室期间,免费提供饮食。
- 5. 如需检疫官的帮助,请使用提供的电话进行呼叫。
- 6. 请注意不要跌落至床下。
- 7. 此隔离室为禁烟区域,请勿在建筑物内吸烟。
- 8. 请不要发出噪音打扰他人。
- 9. 若发热、咳嗽、呼吸困难等症状恶化,请告知检疫官。

健康安全守则

- 1. 务必注意洗手、手部消毒等个人卫生。
- 2. 若有发热和呼吸困难症状(咳嗽、嗓子疼、流鼻涕等),务必随时在 观察室内**佩戴口罩**。

부록 5

검역관리대상자 검역조치 절차 안내

□ 검역관리대상자 지정

- (역학조사팀) 확진자의 접촉자 등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검역 관리팀에 검역관리대상자 등록 요청
- (검역관리팀) 법무부에 검역관리대상자 등록 및 검역 협조 요청

□ 검역조치 절차

< 검역관리대상자 출국 시 > < 검역관리대상자 입국 시 >

1. (출입국외국인청) 검역관리대상자 출국사

- 검역관리대상자가 출국심사 완료 후 관할 검역소에 정보* 공유
- * 출국자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출국편명, 출국시간 등

1. (출입국외국인청) 검역소 통보

• 입국 심사 시 검역관리대상자 중 '검역확인증' 미소지자 검역소 통보

2. (검역소) 검역관리팀에 공유

실 통보 및 정보공유

•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검역관리팀에 공유(메모보고 또는 업무 쪽지 등) * 담당자 032) 740-9207

2. (검역소) 검역관리대상자 검역 수행

-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 절차에 따른 검역 수행 후 '검역확인증' 제공
- 검역관리대상자 입국 메모보고(수신: 검역관리팀)

3. (검역관리팀) 관련 부서 전파

- (역학조사·환자관리팀) 관할 지방자치단체(보건 소)에 전파
- (상황분석·국제협력팀) IHR에 근거하여 출국 국 가에 검역관리대상자 출국 통보

부록 6 단기체류외국인 격리 관련 사항

- □ **단기체류 자격**을 가진 **무증상 외국인**이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자격 외국인과 가족관계가 확인되고 자가격리가 가능한 아래의 경우에 시설격리를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
 - (전환요건) 국내 거소 중인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이 시설 격리 대상자(이하 "본인")와 아래의 가족관계인 경우에 한함
 - ① 본인의 배우자
 - 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직계 존·비속의 배우자도 포함)
 - ③ 본인의 3촌 이내의 혈족
 - (인정절차) 가족관계 증명서 등 공적서류를* 통해 가족관계 확인
 (제출 불요) →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
 - *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국내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혼인관계와 혈족관계 증명은 외국정부 결혼·혈족입증 발행서류 및 아포 스티유 확인서(국가별로 권한기관 지정·발급) 제출 필요
 - 배우자·직계존비속 외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국내거소 중인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외국인으로부터 격리대상자보호확인서 추가 징구
 - *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3촌 이내의 혈족